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년 월 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9조)
 - 위원장(사무처장)과 부위원장(호선)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
 - 충청북도 인사담당국장과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함
- 인사교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5조)
 - 인사교류 필요시,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 수립 후 협의회 심의
 - 협의회 참여기관 인사권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

3. 규칙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규칙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 시·군 및 시·군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위원은 충청북도의 인사담당국장과 시·군 및 시·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는 회의는 출석대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인사교류 절차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해당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